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 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의 전부개정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주택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